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2. 23. 우재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12.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5. 9.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우재준의원)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¹⁾ 및 수소판매사업자²⁾와 같은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

1)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전산망 구축 및 자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장관의 전산망 설치·운영 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제97조의2³⁾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 규정에 대해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개정안 제58조의11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매월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정기검사의 수검 의무 및 개선 명령의 근거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김소희의원안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사항

없음